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의 입학전형 자료 활용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69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 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 대학은 <u>제외한다</u>)의 장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 -----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② ~ ⑨ (생략) <u><신설></u>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u>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u>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제34조제2항)1),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5조 제1항)2).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의 입학전형자료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추가로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을 명시하여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 4).

1)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국제 교육과정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⁵⁾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바, 2024년 9월 기준 전체 2,379개 고등학교 중 99개 학교(4.1%)에서 IB 교육과정을 운영 또는 도입 준비 중에 있음.

< IB 과정 국내 도입 현황 >

시도	학교수(고등학교)				계
	준비학교	IB관심학교	IB후보학교	IB월드스쿨	
대구	9	1	1	5	16
인천	-	14	-	-	14
경기	-	34	1	-	35
충북	4	-	-	-	4
충남	-	2	4	-	6
전북	-	6	-	-	6
전남	-	1	2	-	3
경북	14	-	-	-	14
제주	-	-	-	1	1
계	27	58	8	6	99

※ **준비학교** : 교육청별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

※ **관심학교** : 국제바칼로레아(IB) 본부와 의향서 체결 단계

※ **후보학교** : 국제바칼로레아(IB) 본부로부터 컨설팅 단계(연회비 납부)

※ **월드스쿨** : 5년간 공식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본부의 인증을 받은 학교(매년 연회비 납부)

(자료: 교육부,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

3)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4)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p.35)

고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아)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4)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5) ○국제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개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IBO) 주관으로 국가 간·학생 간 이동, 대학 진학(학점인정) 등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공인교육과정

(유형) 초등(PYP), 중학(MYP), 진학계 고교(DP), 취업계 고교(CP) 등 4개 과정으로 구분되며 ‘DP’ 취득 시에는 해외 대학 등 지원 가능

(특징) 프로젝트, 토의·토론 수업 실시 및 서·논술형 평가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 및 사고력 측정 강조

개정안은 학생들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확대를 위해 국제공인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에서 해당 교육과정 및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국제공인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과정에 도입이 저조한 단계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및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현재 국내에서 IB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표준 대학입학전형 체계에 따른 대입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 또한 해외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통해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학생부 위주	· (학생부종합) 교과·비교과
논술 위주	·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실기/실적 위주	· 논술(대학별고사) 등
수능 위주	· 실기 등
	·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 * 학생부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 학생부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자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대교협)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과정 이수 학생들에게 제도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직 국제공인 교육과정이 고교 현장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입학전형이 확대될 경우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전형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